

# 『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 종 우

나. 제안이유
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
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대한  
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
  - 제명 :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   -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 - 위원회명 :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
    -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
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추가(안 제2조)
  -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
  -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7조)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,  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- 본 「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  - 관련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,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추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 조항과 해촉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